

2025년 KRIC 기후 리더십 아카데미 제3차

CBAM 기초부터 산정 실무까지 A to Z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이다은 팀장

2024.2.18 (화)

leede@kric.re.kr

01 EU CBAM 개념

EU CBAM

무역관세의 일종으로 탄소규제가 낮은 EU 역외에서 생산되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함.
 EU역내 수입제품이 EU-ETS 대상의 동일 제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도록함.



CBAM 인증서 (예시) €80 = €100 - €20

※적용예외(EU와 전력시장 통합된 국가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 등)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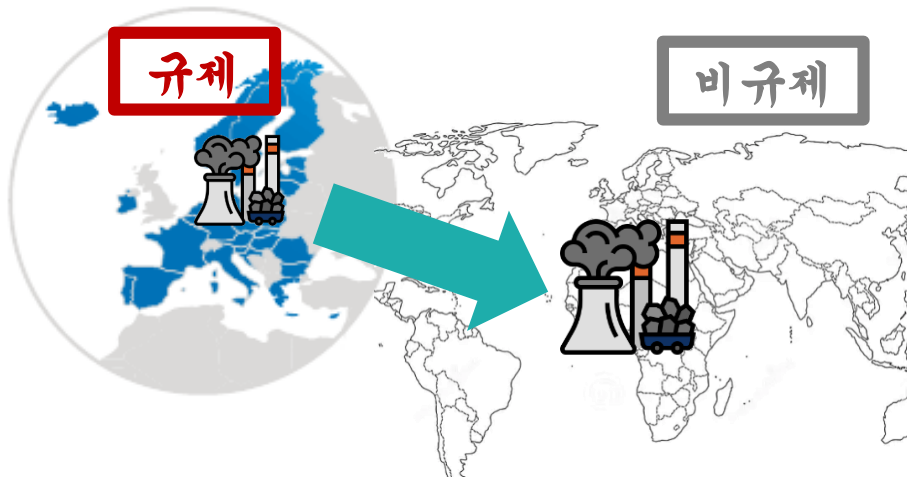
CBAM 도입 전 EU 역외국이 부담하는 탄소가격 : EU 역외 탄소가격만 부담 (예시) €20

CBAM 도입 후 EU 역외국이 부담하는 탄소가격 : CBAM 인증서를 구입(예시) €80 하도록 하여, EU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 부담 (예시) €100

❖ EU CBAM 도입 배경 ① 탄소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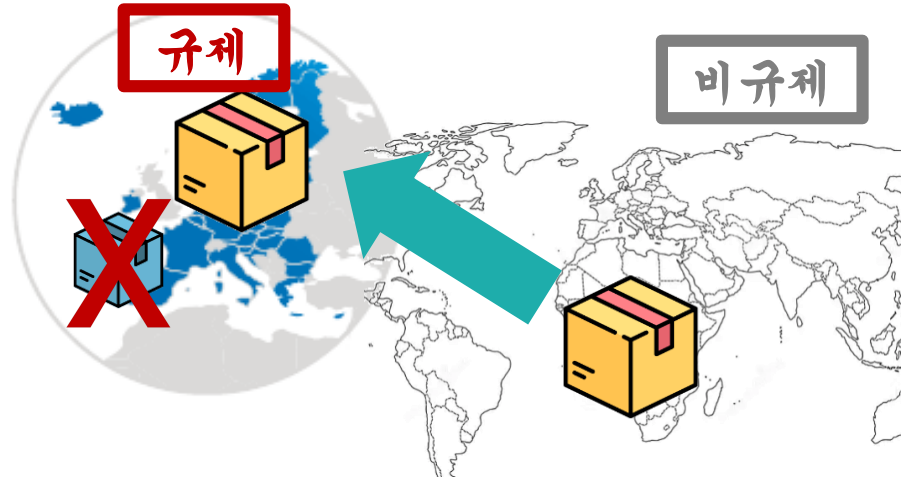
정의 ①

- 한 국가/연합에서의 기후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때문에 기업들이 온실가스 관련 규제 또는 조치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
- (예시) EU의 경우, 2005년부터 EU-ETS를 도입하여 EU 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함. 이로 인해 EU 역 내 기업은 인건비, 자재비용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배출권 구매,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EU 역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이에 EU 역 내 기업이 타 국가로 이전하게 됨



정의 ②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높은 수입제품의 사용/구매 증가하는 것
- (예시) EU 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낮은 EU 역내 생산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타 국가에서 생산된 저렴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높은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말함



∴ 탄소누출이 발생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하게 됨

✧ EU CBAM 도입 배경 ② EU-ETS

세계최초(2005년~) 도입된 총량거래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거래제로
 CBAM과 밀접한 관련(무상할당, 내재배출량 산정 등)이 있어, 개정사항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적용 범위 EU 회원국 + 4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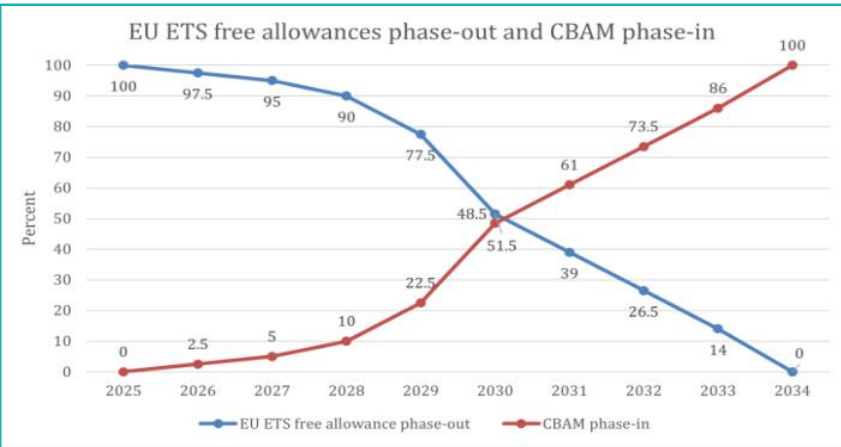
온실가스 CO₂, HFC, N₂O, PFCs, SF₆ **대상 기준 [발전]** : 연료 투입량 기준 20MW 이상 연소시설

부문 발전, 산업, 항공 **[산업공정]** : 유류정제소, 코크스로, 철강 제련시설, 시멘트, 제지, 유리, 석회, 벽돌 제조시설 등

배출활동 29개: 연소, 공정배출, 항공, 탄소포집 등 **[국내항공]**: 상업항공기연10천톤 이상/비상업 항공기연1천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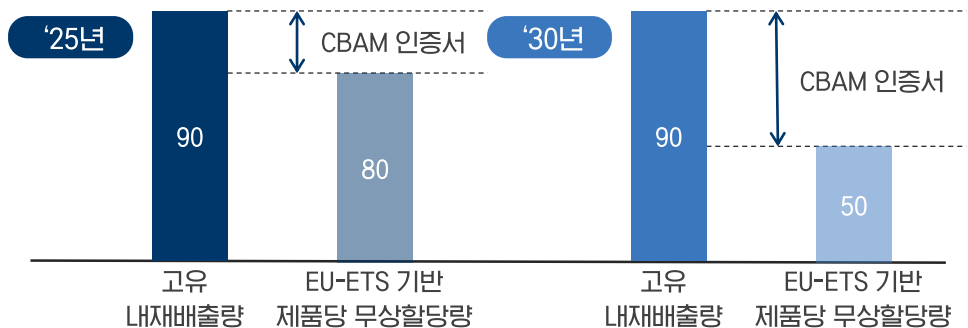
유상할당 [발전] 일부 저소득 회원국 제외 100%. [산업] 탄소누출 목록 대상 제외 점진적 100% [항공] 점진적 100%(24년 25%)

무상할당 ①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0.2 ② 0.15 < 무역집약도 x 배출집약도 < 0.2인 경우
 정성평가(감축여력, 배출권시장 특성, 기업이윤 등)를 통해 무상할당 여부 결정



■ EU-ETS 무상할당 점진적 폐지와 CBAM 도입 비율

• 무상할당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CBAM 인증서 구매량 ↑



02 EU CBAM 도입배경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달성을 위해 **EU-ETS의 무상할당 폐지하고 이에 따른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CBAM 도입**

■ EU CBAM 도입 연혁

일정	요약	주요 내용
'19.12	"European Green Deal"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전환
'21.07	"Fit for 55" 발표	'30년까지 1990년 대비 CO ₂ 배출 55% 감축
'23.05	CBAM 규정 발효 (EU) 2023/956	CBAM 적용범위, 역할·의무·권리 정의
'23.08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확정 (EU) 2023/1773	의무 이행 세부 내용 확정
'23.10 ~ '25.12.31	CBAM 전환기간 시작	'23년 4분기에 대한 1차 보고서 제출(~ 24.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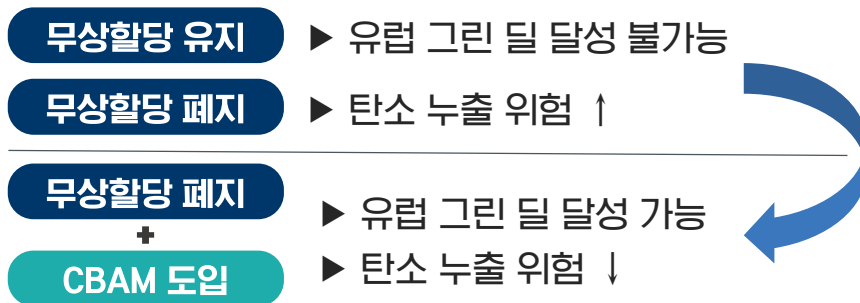
< Fit for 55 >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및 정책
- 총 13개의 입법안 패키지 중 CBAM 신규 제정과 EU-ETS 개정안 포함

CBAM 도입	EU역내 수입제품이 EU-ETS 대상의 동일 제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 부과
ETS 신설·강화	① 해운업, 건물 및 도로·운송 부문 포함 ② 무상할당 점진적 폐지 등

- 참고. 무상할당/탄소누출/CBAM 관계

- (현황) EU-ETS 탄소누출 방지 위해 일부 무상할당 中



03 EU CBAM 적용범위

EU CBAM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6개 품목 포함
단, 150€ 이하의 소형 품목(샘플용 제품 등) + 군사용 물품 제외

■ CBAM 적용 품목 : 25년 기준 6개

품목	CN 코드
시멘트	25070080, 25231000, 25232100, 25232900, 25233000, 25239000
전력	27160000
비료	28080000, 2814, 28342100, 3102, 3105(제외품목 : 310560)
철강	72(일부 철강류 제외*),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00, 7310, 731100, 7318, 7326, 26011200 * 제외품목 : 7204, 72022, 72023, 720250, 720270, 720280, 720291, 720292, 720293, 72029910, 72029930, 72029980
알루미늄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00, 7610, 76110000, 7612, 76130000, 7614, 7616
수소	280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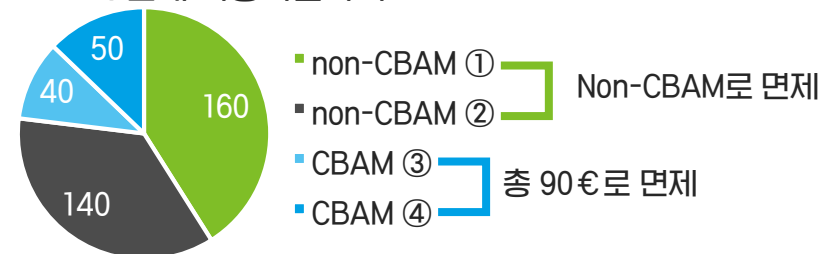
※ 집행위/이사회/의회 3자 협의과정에서 철강의 특정 전구물질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포함

※ 유럽의회가 포함시킨 유기화학, 폴리머의 경우 1차 대상품목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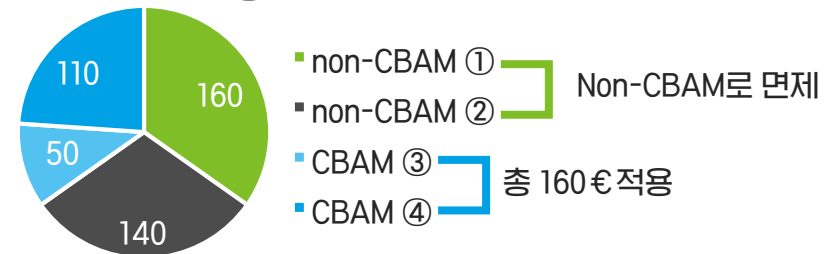
■ EU CBAM 적용 면제 대상

- 최소 면제 기준은 하나의 탁송화물가치가 150€ 이하인 경우 적용 ▶ 분할 선적시 불이익

CASE1. 전체 탁송화물가치 390€



CASE2. 전체 탁송화물가치 460€



- 군 기관 간 직접 제품 수입은 면제되나, EU 역내 회사가 제3국으로부터 제품 수입하여 생산-가공 후, EU 군 기관에 판매시 CBAM 적용 대상

※ 탁송화물(Consig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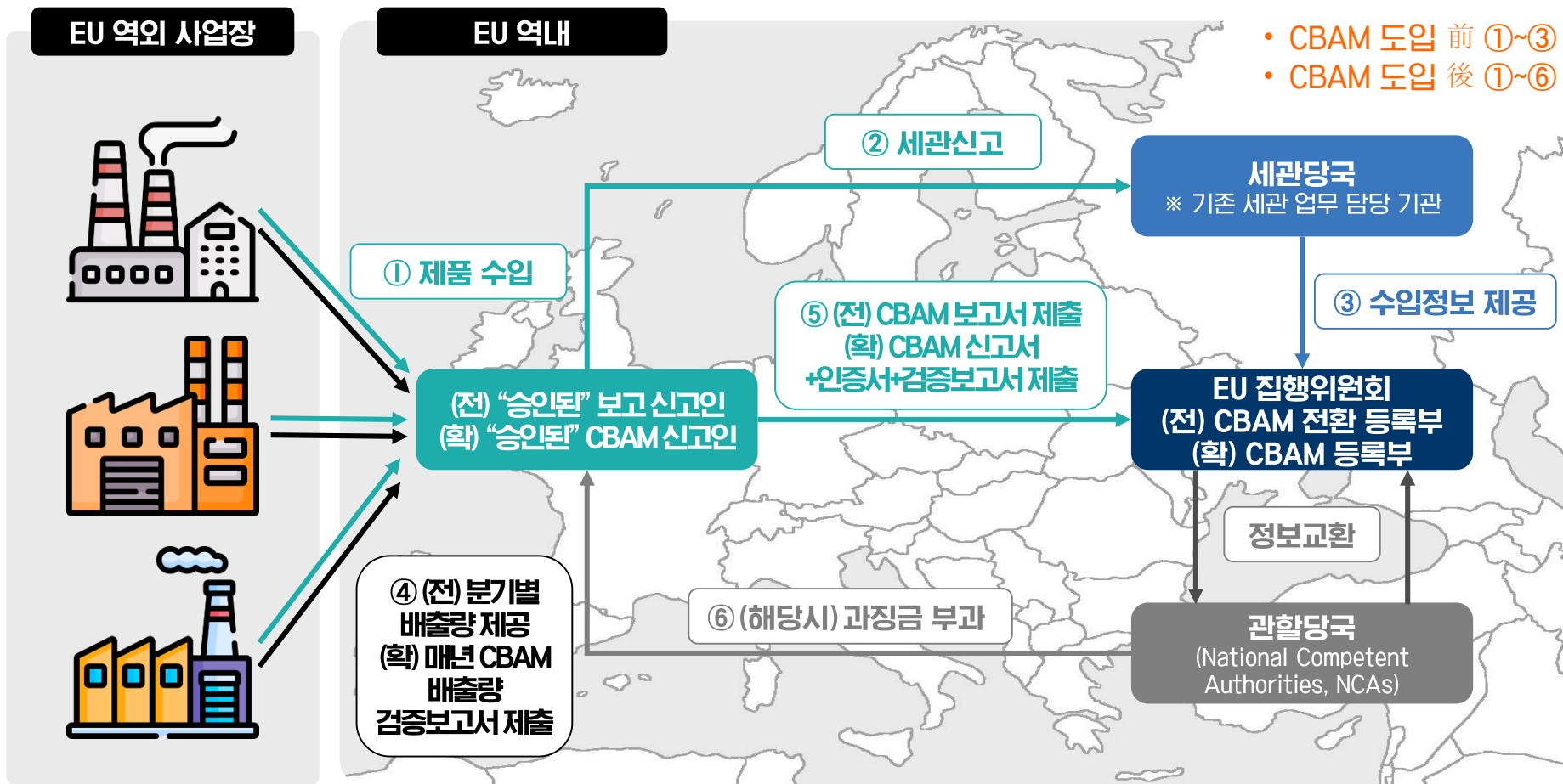
단일 탁송화물

- (a) 한 수출업자에서 한 수화인에게 동시에 발송된 제품, 또는
- (b) 수출업자가 수화인에게 발송되는 운송 문서 하나에 의해 커버되거나, 그러한 문서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으로 커버되는 제품.

- ※ **CASE1** 같은 발송자가 같은 수화인에게 발송한 상품이 개별적으로 주문되고 발송되었으며, 도착지에서 우편 사업자나 특송 업체에 각각 별도의 소포로 도착한 경우, 같은 날 도착했다라도 별개의 탁송화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 ※ **CASE2** 같은 사람이 한 번에 주문한 상품이라도 개별적으로 발송된 경우, 별개의 탁송화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세관 통제를 규율하는 규정(통합관세법 제4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세관 당국은 세관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통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CBAM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회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선적을 분할하여 150유로의 최소 가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04 EU CBAM 절차

CBAM 신고인이 EU 역외 사업장으로부터 CBAM 보고서/신고서 제출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받음
그 외에도 세관당국/관할당국/EU 집행위원회(CBAM 등록부)에서 절차별 역할을 맡음



※ 보고신고인 및 CBAM 신고인 R&R

일정	보고 신고인	관할당국 & EU 집행위	비고
2024년 12월 31일부터 가능	수입업자 및 세관대리인이 신청	검토(15일) 및 승인, CBAM 계정 부여	CBAM 전환 등록부 통해 신청서 제출
전환기간 (예: 25.1~25.3)	CBAM 대상 제품 수입		
전환기간 (예: ~25.4.30)	CBAM 보고서 제출 분기 종료일 1개월 내	미제출, 부정확 불완전 여부 검토	과징금 10~50 유로/tCO ₂ e
일정	CBAM 신고인	관할당국 & EU 집행위	비고
2024년 12월 31일부터 가능	수입업자 및 세관대리인이 신청	검토(15일) 및 승인, CBAM 계정 부여	CBAM 등록부 통해 신청서 제출
확정기간 (예: 26.1.1~26.12.31)	CBAM 대상 제품 수입 & 인증서 구매(80%)		
확정기간 (예: ~27.5.31)	인증서 및 신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	미제출, 부정확 불완전 여부 검토	인증서 미제출시 과징금 100 유로/tCO ₂ e
확정기간 (예: ~27.6.30)	잔여인증서 환불 신청 (전년도 구매량 1/3)	잔여인증서 환불 (지불 금액에 맞춰)	

05 전환기간 vs 확정기간

CBAM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따라 보고 내용 및 빈도, 의무사항이 상이함
 전환기간에 대해 대응하며 확정기간에 대한 규정, 의무 등에 대해 지속적인 Follow-up 필요

구분	전환기간(the transitional period)	확정기간(the definitive period)	
근거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3/1773)	CBAM 규정 (Regulation (EU) 2023/956)	
기간	2023.10.1. ~ 2025.12.31.	2026.1.1. ~	
의무사항	측정	특정 방법론 사용 유예	측정기반 또는 산정기반 모니터링 접근법 필수
	보고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유 내재배출량, 분기 수입량, 기저물 탄소가격)	연 1회 CBAM 신고서 제출 (차년도 5월 31일까지) (+보고 정보, 검증보고서, CBAM 인증서)
	검증	미요구 ※ 단, 사업자와 수입업자는 가급적 정확하고 완전한 보고를 목표, 검증이 된 경우라면 제출시 명시함 ※ ISO 14065 인증된 검증기관 수행 권고, 국내 13개 검증기관 보유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보고서 제출
	인증서	미요구	CBAM 인증서 제출 (차년도 5월 31일까지)
내재배출량 산정	특정방법론 사용 유예[non EU 방법(~ '24.12), 기본값 사용 방법(~ '24.7)] 또는 추정값 사용	EU CBAM 방법론 사용	
과징금	CBAM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정확·불완전 보고서에 대해 10~50 유로/tCO ₂ e(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승)	CBAM 인증서 미제출 시 (2013년 EU-ETS 초과배출 과징금 100유로/tCO ₂ e과 동일하며,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승)	

06 EU CBAM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역할

EU CBAM에서 CBAM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에 따라 기업은 각각 다르게 대응 해야하며, 기업은 CBAM 보고서 직접 제출/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제출/ 고유 내재배출량 정보 제공해야함



※ 판매사가 직접적으로 EU로 상품을 수출하지 않는 경우, 판매사는 CBAM의 의무 주체가 아니므로 내재배출량 산정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판매처의 정보 미제공 시 **구입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공한 기본값을 활용해 보고 또는 최종 복합상품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함**

07 EU CBAM 이해관계자 : ① EU 역외 사업장(수출업체)

CBAM 신고인이 CBAM 보고서/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EU 역외 사업장은 ① 정보 제공 ② 내재배출량 검증 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함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 수출 업체가 EU의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정보, 생산 공정 및 생산경로, 상품별 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를 말함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구분	내용
사업장 정보	• 사업자 이름 및 연락처, 사업장 이름 및 연락처, 사업장 고유 식별자, UN/LOCODE, 주소 등
생산공정 및 생산경로	• 전환기간 이행규정 부속서 II의 표 1 참고
상품별 정보	• 상품 별 고유 직접/간접 내재배출량, 데이터의 모니터링 방법, 배출계수 및 정보 출처, 전력 배출계수, 기본값의 사용 이유, 기지불 탄소가격 등

※ EU에서 보고 신고인과 사업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CBAM communication template”을 만들어 제공하여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최신 버전이 아니더라도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의 양식 활용 가능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 Ver2.1_2024.06.05.

A. Sheet "A_InstData" - General information, production processes and purchased precursors

1 Reporting period		Start	End					
Please enter here the starting date and the end date of the reporting period to which the data entered in this communication template refers to. For example, if you want to report data based on the whole calendar year 2023, the starting date would be 1.1.2023 and the end date 31.12.2023. It is important that all data entered in this template (embedded emissions, carbon price due, product properties, etc.) all relate to that same reporting period entered above.								
2 About the installation								
I. Name of the installation (optional):								
ii. Name of the installation (English name):								
iii. Street, Number:								
iv. Economic activity:								
v. Post code:								
vi. P.O. Box:								
vii. City:								
viii. Country:								
ix. UNLOCODE:								
x. Coordinates of the main emission source (latitude):								
xi. Coordinates of the main emission source (longitude):								
xii. Name of authorized representative:								
xiii. Email:								
xiv. Telephone:								
3 Verifier of the report – only if available and not required during transitional period								
(a) Name and address of the verifier of this report:								
i. Company Name:								
ii. Street, Number:								
iii. City:								
iv. Postcode/ZIP:								
v. Country:								
(b)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the verifier:								
The nominated person should be familiar with this report. Ideally it is the lead verifier involved with this report.								
i. Name:								
ii. Email address:								
iii. Telephone number:								
iv. Fax:								
4 Aggregated goods categories and relevant production processes								
(a) List of aggregated goods categories, relevant precursors and corresponding production routes								
Please list here ALL aggregated goods categories, including any relevant precursor types produced WITHIN the installation.								
Where relevant, please list all production routes through which the aggregated goods are produced.								
ID	Aggregated goods category	Route	Route 1	Route 2	Route 3	Route 4	Route 5	Route 6
G1								
G1								
G3								
G4								
G5								
G6								
G7								
G8								
G9								
G10								

07 EU CBAM 이해관계자 : ② CBAM 신고인

CBAM 확정기간 시작일('26.1.1)부터 승인된 CBAM 신고인을 통해서만 EU 역내로 수입 가능
 우리나라 기업도 기준과 절차를 충족할 시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 **“직접” CBAM 신고인이 될 수 있음**

■ 전환기간 vs 확정기간

구분	전환기간 ('23.10.1~ '25.12.31)	확정기간 ('26.1.1~)
주체	보고 신고인 (Reporting declarant) ※ 전환기간 이행규정 제3조	CBAM 신고인 (CBAM declarant) ※ CBAM 규정 제5조
서류	CBAM 보고서 ※ 전환기간 이행규정 제8조	CBAM 신고서 ※ CBAM 규정 제6조
시스템	CBAM 전환 등록부 ※ 전환기간 이행규정 제10조	CBAM 등록부 ※ CBAM 규정 제14조

※ 신고자 승인 이행규정은 24.12 발효, 25.1.1부터 신청 가능

■ CBAM 신고인 승인 절차

구분	내용	규정
신청	• (주체) 회원국 소재 수입업자 or 세관대리인 • (방식) CBAM 등록부를 통해 신청서 제출	제5조
협의	• (주체) 신청인 소재 NCA, 그 외 NCAs, EU 집행위 • (검토기간) 근무일 기준 15일	제17조
승인	• (주체) 신청인 소재 NCA ※ 승인시 CBAM 신고인은 모든 NCAs에서 인정	제17조
계정	• (주체) EU 집행위원회 • 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고유한 CBAM 계정번호 배정	제16조

■ 승인신청서의 정보

구분	내용
(a)	•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신청자 주소가 회원국 소재지가 아닐 경우, 세관대리인이 신청
(b)	•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 사업자 등록 식별번호
(c)	• EU에서 수행되는 주요 경제활동
(d)	• 신청자가 국세 채무에 대한 미납상환명령(outstanding recovery order)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명서로서 신청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의 세무당국이 발급한 것
(e)	• 신청자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대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신청 연도 이전 5년 동안 관세법, 조세규칙 또는 시장남용규칙(market abuse rules)의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명예선언서(declaration of honor)
(f)	• 신고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관할당국이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예: 손익계정 및 해당 계정이 폐쇄된 최근 3개 회계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g)	• 신청서가 제출된 연도(calendar year) 및 그 익년에 상품 유형별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금전적 가치 및 물량 추정치
(h)	•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가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 CBAM 규정 및 이행규정의 심각 또는 반복적 위반 여부를 평가함

※ CBAM 등록부(CBAM registry)

CBAM 등록부

CBAM 신고인, 제3국 사업자 및 사업장 등이 CBAM 관련 절차를 수행하거나, CBAM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임

■ CBAM 등록부의 정보

구분	내용
(a)	•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b)	• 승인된 CBAM 신고인의 EORI 번호
(c)	• CBAM 계정번호
(d)	• 각각의 승인된 CBAM 신고인에 대한 CBAM 인증서의 식별번호, 판매가격, 판매일, 제출일, 환매 또는 취소 정보

■ CBAM 신고인의 CBAM 등록부 활용방안

구분	내용	규정
1	• CBAM 신고인 승인 신청	제5조
2	• CBAM 계정 배정	제16조
3	• CBAM 신고서 제출	제6조
4	• CBAM 인증서 제출 ※ CBAM 인증서 구매 및 환매는 “공통 중앙 플랫폼” 활용	제22조
5	• 제3국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획득 : 등록된 사업자가 검증을 받아 제출한 제품별 내재배출량 등	제10조
6	• EU 집행위원회의 사실 통지 : CBAM 신고서 정보 부족, CBAM 인증서 수량 부족, CBAM 인증서 취소 등	제19조

< EU CBAM 이해관계자 : ③ 제3국 사업자 >

-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을 위한 사업장의 상세 데이터를 승인된 CBAM 신고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결과값만을 제공 ▶ 중요 데이터 보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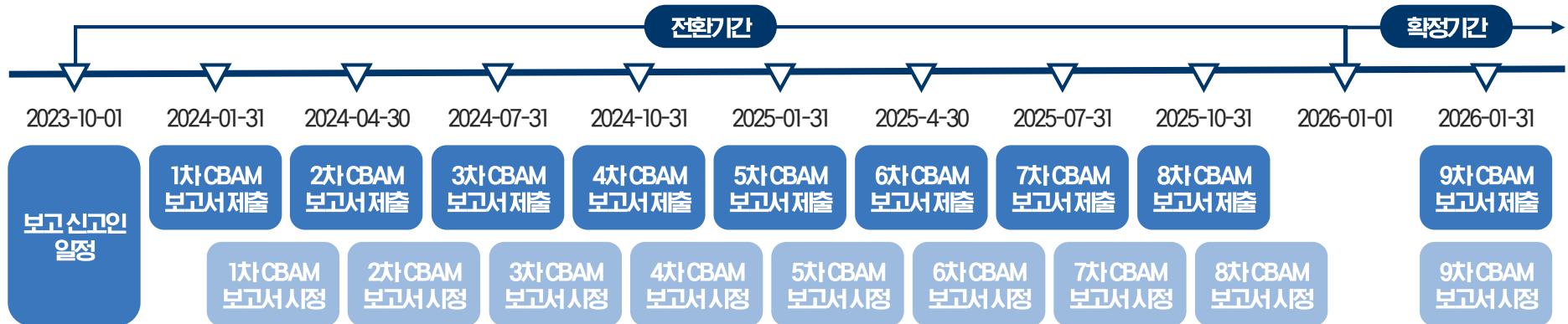
- 제3국 사업자 등록 절차

구분	내용
신청	• (주체) 제3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 • (방식) CBAM 등록부를 통해 “등록요청서” 제출 • (등록요청서 내용) ❶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❷ 각 사업장의 위치(완전한 주소 및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까지 경도와 위도로 표시된 좌표 포함), ❸ 사업장의 주요 경제활동
의무 사항	• 생산되는 제품 유형별 “내재배출량” • “내재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 관련 기록의 보관(4년간)
등록 통지	• (주체) EU 집행위 • (통지내용) CBAM 등록부상의 등록 사실을 통지 • (등록 유효기간)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
변경 통지	• (주체) 제3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자 •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변경사항을 EU 집행위에 지체없이 통지 ▶ EU 집행위는 CBAM 등록부 상 해당 정보 갱신함

08 전환기간 주요 내용 요약

전환기간

CBAM 본격 시행 전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도입함. 대상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수출국의 데이터 수집이 목적으로 CBAM 신고인은 인증서 구매의무 없이 보고서 제출 의무만 가짐



의무사항 온실가스 배출의 측정(Measuring) 및 보고(Reporting) ▶ CBAM 보고서 제출, CBAM 보고서 시정

보고 항목 수입상품 CN코드 및 수량, 원산지 국가, 생산공정 및 내재배출량, 기지불 탄소 가격 등

방식 “승인된 보고 신고인” 만 접근가능한 CBAM 전환 등록부(Transitional registry)를 통해 제출

내재배출량산정방식 ① EU 방법 ② non EU 방법 ③ 기본값 사용방법 ④ 추정값 사용 방법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 적용 기간

- ① EU CBAM 산정방식만 인정(계속)
- ②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법론) 활용 가능 (~'24.12.31)
- ③ EU 집행위 기본값 사용 가능(~'24.7.31)
- ④ 복합제품 배출량 중 최대 20%까지 사업장의 추정치(기본값) 사용 가능(~'25.12.31)

※ CBAM 배출량 보고기간 : 산정기간

산정기간

CBAM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하며, 역년(12개월, 1/1~12/31)/분기(3개월)/최신 데이터로 자사/타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됨.

■ 내재배출량 산정기간

CBAM 보고서 차수 및 기간	보고기간 (분기 기준)	CBAM 보고서 제출기간	자사 시설군 데이터		타사 시설군 데이터 (전구물질의 고유내재 배출량, 전력 등 타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시설군의 배출량, 생산량 (역년 기준)	EU 역내 수입량 (분기 기준)		
1	23년 4분기 보고서	'23.10~ '23.12	~ '24.1.31	23년 데이터	23년 4분기	가능한 최신 데이터 사용
2	24년 1분기 보고서	'24.1. ~ '24.3.	~ '24.4.30	23년 데이터	24년 1분기	
3	24년 2분기 보고서	'24.4. ~ '24.6.	~ '24.7.31	23년 데이터	24년 2분기	
4	24년 3분기 보고서	'24.7. ~ '24.9.	~ '24.10.31	23년 데이터	24년 3분기	
5	24년 4분기 보고서	'24.10. ~ '24.12.	~ '25.1.31	24년 데이터	24년 4분기	
6	25년 1분기 보고서	'25.1. ~ '25.3.	~ '25.4.30	24년 데이터	25년 1분기	
7	25년 2분기 보고서	'25.4. ~ '25.6.	~ '25.7.31	24년 데이터	25년 2분기	
8	25년 3분기 보고서	'25.7. ~ '25.9.	~ '25.10.31	24년 데이터	25년 3분기	
9	25년 4분기 보고서	'25.10. ~ '25.12.	~ '26.1.31	25년 데이터	25년 4분기	

※ CBAM 배출량 보고기간인 12개월의 설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역년(1/1~12/31)이지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회계연도를 특정 월로 고정하여 관리 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간의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
(예) A기업 7월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시작 시 7/1~6/30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08 전환기간 : CBAM 보고서

배출량 관련 정보와 지지불한 탄소가격 정보 등이 CBAM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보고서양식에 수출 시기입하는 일반정보가 더 많으니 전환기간에는 기간 내 제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CBAM 보고서 주요 내용

- 부속서 I 의 각 정보에 대한 CBAM 보고서 분기별 제출 필요
- 사용한 내재배출량 산정방법론 정보 및 설명 제공

구분	항목
일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입된 상품량 • 보고신고인 (식별번호/이름/역할/소재국가 등) • 세관 대리인 (식별번호/이름/소재국가 등) • 관할당국 • 상품코드(HS 6단위 코드/CN 코드)
전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의 총 배출량 • 증빙서류(상품 관련)수입상품의 배출량 • CBAM 상품 배출량 • 직접 내재배출량 • 생산방법 & 적격 매개변수(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 지지불한 탄소가격, 지지불한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제품
불확실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확인 (확인데이터 사용, 서명인 등) • 적용 가능한 보고 방법
선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관련 특이사항 • 매개변수 추가정보 • 지지불한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제품 • 그 외 첨부파일

■ CBAM 내재배출량 산정

구분	CBAM 상품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
보고단위	상품 톤당 배출량					MWh
적용 온실가스	CO ₂	CO ₂ (일부 N ₂ O)	CO ₂	CO ₂ (일부 PFC)	CO ₂	CO ₂
전환기간 적용 배출량	직접 및 간접					직접만
확정기간 적용 배출량	직접 및 간접		직접만 (검토 중)			직접만
직접 내재배출량	(~24.6.30) 기본값 100% 사용 (~25.12.31) 기본값은 총배출량의 최대 20%					기본값
간접 내재배출량	(~24.6.30) 기본값 100% 사용					적용불가

09 CBAM 인증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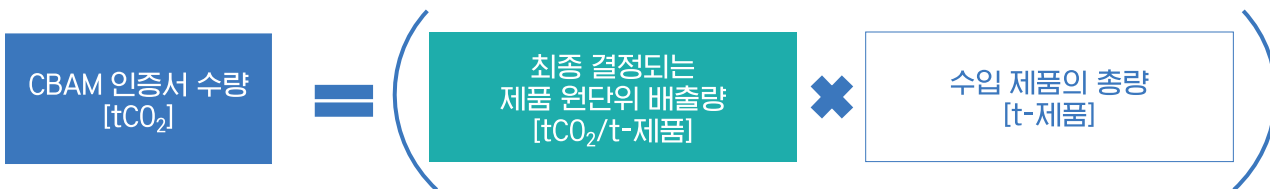
① EU-ETS 무상할당량 ② EU 역외국의 기 지불 탄소가격 고려하여, CBAM 인증서 수량 결정
 확정기간부터 CBAM 신고인은 CBAM 인증서 구매하여 제출해야함

1단계: 제품 원단위 배출량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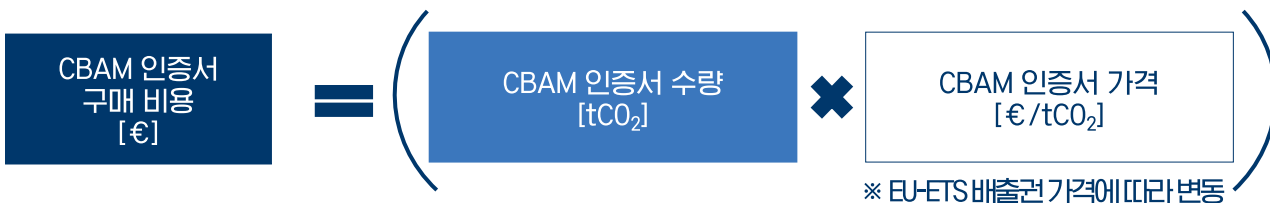
▼ 수출업체가 산정하는 원단위



2단계 : CBAM 인증서 수량 계산



3단계 :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 CBAM 인증서 계산 예시

■ CBAM 규정

- (46) An authorised CBAM declarant should be allowed to claim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CBAM certificates** to be surrendered corresponding to the carbon price already effectively paid in the country of origin for the declared embedded emissions.
- (c) **the total number of CBAM certificates** to be surrendered, corresponding to the total embedded emissions referred to in point (b) of this paragraph after the reduction that is due on the account of the carbon price paid in a country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and the adjustment necessary to reflect the extent to which EU ETS allowances are allocated free of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 예시

고유 내재배출량 10tCO₂/t-제품 EU-ETS 기반 제품당 무상할당량 8tCO₂/t-제품

EU 역내 수입 제품 ton 100ton 제품당 기지불한 연평균 탄소가격 €3/t-제품

CBAM 인증서 가격 €10/tCO₂



< 최종 CBAM 인증서 구매 금액 산정 >

$$(A) \text{고유내재배출량} - \text{무상할당량} = \frac{(10-8)t\text{CO}_2}{t\text{-제품}} = \frac{2t\text{CO}_2}{t\text{-제품}}$$

$$(B) \text{연평균 기지불한 탄소가격} = \frac{€3}{t\text{-제품}}$$

$$(B') \text{제품당 배출량으로 전환} = \frac{€3}{t\text{-제품}} \div \frac{€10}{t\text{CO}_2} = 0.3 \frac{t\text{CO}_2}{t\text{-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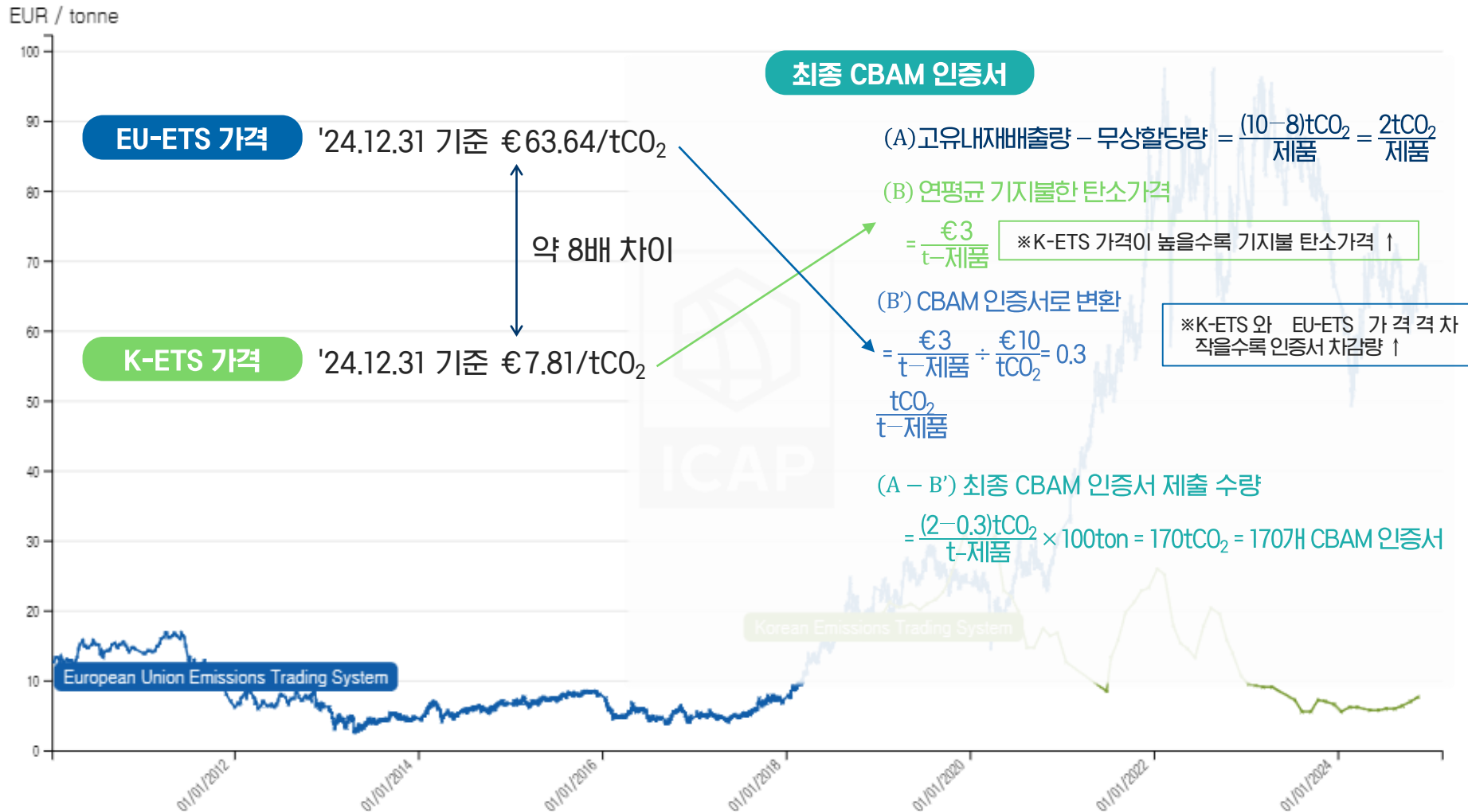
(A - B') 최종 CBAM 인증서 제출 수량

$$= \frac{(2-0.3)t\text{CO}_2}{t\text{-제품}} \times 100\text{ton} = 170t\text{CO}_2 = 170\text{개 CBAM 인증서}$$

(C) CBAM 구매 비용

$$= 170\text{개 CBAM 인증서} \times \frac{€10}{t\text{CO}_2} = €1,700$$

❖ 기지불 탄소가격 : EU-ETS vs K-ETS 가격 비교



※ 타 국가 유사제도 : 미국의 CCA

구분	미국 CCA	EU CBAM
적용품목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재화 ※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은 7개 업종(3단위 NAICS 기준)으로 분류 가능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수소, 전기, 비료
배출량 범위	직접배출량+간접배출량-탄소포집량	전환기간 : 전기 제외 모두 직간접 포함 확정기간 : 시멘트& 비료 ▶ 직간접, 철강&알루미늄&수소&전기 ▶ 직접만
대상 범위	2025년 원자재에 최초 적용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	EU로 수입되는 제품 탁송화물 기준 CBAM 대상 150유로 이상, 군사용품 제외 등
적용 산식	탄소세 = (A) X (B) X (C) X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 원산지 일반경제 탄소집약도/미국 일반경제 탄소집약도 × 미국 업종 단위 탄소집약도 (B) : 적용비율 ▶ 2025년 : 100%, 2026~2029년 : 전년도 적용 비율에서 2.5%p 감소한 비율, 2030년 이후 : 전년도 적용 비율에서 5%p 감소한 비율 (C) : 중량(톤) (D) : 탄소가격 	탄소세 = (A) X (B) X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수입 제품당 생산시설의 실제 원단위 배출량 - EU 무상할당 원단위 배출량 - CBAM 기지불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배출량 (B) : 중량(톤) (C) 탄소가격
탄소가격	1톤당 55달러 ※ 전년도 탄소가격 X {소비자물가(CPI) 인상률 + 5%p} 만큼 매년 인상	매주 탄소배출거래제(EU-ETS) 가격 연동

※ 기타 CBAM 현황 : 경쟁력 나침반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25.1.29 EU 집행위에서 향후 5년간의 EU의 경쟁력 회복과 기업 규제 간소화 전략을 통신문 형태로 발표
3대 핵심 정책 목표(Pillars) 및 5대 촉진 정책과제(Horizontal enablers) 제시

※ 통신문 : EU 집행위의 추진 정책을 발표하는 공식 문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발표 이후 세부 정책 추진 및 입법화 예정

■ 3대 핵심 정책 목표

- ① 기술 혁신 격차 해소: AI·반도체 산업 육성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
- ② 탈탄소화와 경제 성장의 동시 추진 로드맵: 청정산업 협약 발표
- ③ 공급망 자립 및 경제 안보 강화: 원자재·반도체·에너지 공급망 보호

■ 5대 촉진 정책과제

- ① 규제 부담 완화
- ② 단일시장 경쟁력 강화
- ③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및 투자 활성화
- ④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개발 지원과 일자리 확대
- ⑤ 회원국간 정책 조율

Brussels to exempt most EU companies from carbon border tax

More than 80% to be exempted by reforms aimed at cutting red tape and boosting productivity



웁크 후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2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조세담당 소위원회에 출석해 "CBAM과 연관된 업체들의 관련 수치를 살펴본 결과 이들 중 약 20%의 배출량이 (전체 비용 부과 대상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집행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5개년 로드맵인 '경쟁력 나침반'에서도 제안됐다. 당시 집행위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역내 규제부담을 전례없이 간소화하겠다고면서 CBAM의 중견·중소기업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르줄라 집행위원장은 특히 ESG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존의 여러 EU 규제를 '광범위하게' 간소화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안(옵니버스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